

동물용의약품등의 조건부제조업 및 제조품목조건이행신고서

접수번호		접수일		처리기간 15일	
신고인 (대표자)	성명			생년월일	
제소소	명칭 (전화번호 :)				
	소재지				
조건부 허가사항	허가번호			허가일자	
	허가조건				
조건부허가 품목명					
제조 대상 동물용의약품등의 용도		☐ 농림축산용 ☐ 양봉용·양잠용·애완용(관상어 제외) ☐ 농수산 검용 ☐ 수산(관상어 포함) 전용			

「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」 제10조제3항에 따라 (동물용의약품·동물용의료기기·동물용체외진단 의료기기)의 조건부제조업 및 제조품목허가의 조건을 이행하였음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농림축산검역본부장·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

첨부서류	1. 조건부 제조업 및 제조품목 허가증 1부	수수료
	2. 허가조건에 명시된 조건의 이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	없음

처리절차

